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1998. 11. 7.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제3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9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

2. 主要骨字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98.11.26. ~ '98.12. 2.)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9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

3. 關係法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
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9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98. 11. 26 (목) ~ 1998. 12. 2 (수)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의회사무국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운영 위원회	[위원장] 윤정용 [간사] 이매숙 [위원]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렬,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마포구의회 사무국	운영 위원회실	박용석

5. 監査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단계	'98.11. 4.(수) ~11. 6.(금)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감사관계 자료수합		
	11. 5.(목) ~11. 7.(토)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 9.(월)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계획 통보		
	11.10.(화) ~ 11.25.(수)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시단계	'98.11.26.(목) ~ 12. 2.(수)	○위원장의 감사선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종료 선언	
감치사리결단과제		'98.12. 3.(목) ~ 12.24.(목)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감사결과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의회사무국 1998년도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보고및 질문,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1998. 11. 7.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장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9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

2. 主要骨字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98.11.26 ~ '98.12. 2)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총무건설위원회 위원 전원(11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

3. 關係法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9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98. 11. 26. (목) ~ 1998. 12. 2. (수)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 동사무소(24개동)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총무건설 위원회	[위원장] 유 응 봉 [간 사] 신 봉 현 [위 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총무건설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	임 민 상
	김 세 창, 김 영 식, 박 주 서, 유 남 렬, 이 매 숙, 정 만 직, 정 형 기, 조 영 천, 홍 성 환			

5. 監査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8.11. 4.(수) ~11. 6.(금)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감사관계 자료수합	
	11. 5.(목) ~11. 7.(토)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 9.(월)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계획 통보	
	11.10.(화) ~11.25.(수)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8.11.26.(목)	○위원장의 감사선언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담당관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감사담당관 감사	
	'98.11.27.(금)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건설관리과 감사 - 토 목 과 감사 - 하 수 과 감사 - 교통행정과 감사 - 교통지도과 감사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실 시 단 계	'98.11.28.(토)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재정국장 인사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기획예산과 감사 - 재 무 과 감사 - 세 무1과 감사 - 세 무2과 감사 - 지 적 과 감사	
	'98.11.30.(월) ~12. 1.(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추후 24개동중 일부 동 선정,감사)	
	'98.12. 2.(수)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감처 사리 결단 과계	'98.12. 3.(목) ~12.24.(목)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감사결과 처리및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각 과별, 동사무소별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및 질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1998. 11. 7.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提 案 理 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 및 마포 개발공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9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

2. 主 要 骨 字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98.11.26 ~ '98.12. 2)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시민도시위원회 위원 전원(12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실및동사무소로 한다.

3. 關 係 法 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 및 마포개발공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9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98. 11. 26 (목) ~ 1998. 12. 2 (수)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 동사무소 (24개동)
- 마포개발공사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시민도시 위원회	[위원장] 김 순 금 [간 사] 임 종 철 [위 원] 권 오 범, 김 유 현, 박 상 수, 박 영 길, 윤 정 용, 이 종 일, 이 진 표, 이 천 규, 채 재 선, 한 대 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 건 소, 동사무소 마포개발공사	시민도시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 마포개발공사	박 용 석

5. 監査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 단계	'98.11. 4.(수) ~11. 6.(금)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수합	
	11. 5.(목) ~11. 7.(토)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 9.(월)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11.10.(화) ~11.25.(수)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시 단계	'98.11.26.(목)	◦ 위원장의 감사선언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24개동중 2개동 선별감사)	
	'98.11.27.(금)	◦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생활복지국장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산업위생과 감사 - 환경과 감사	
'98.11.28.(토)	◦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보건소장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보건행정과 감사 - 보건지도과 감사 - 의약과 감사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실시 단 체	'98.11.30.(월)	○사회복지과 감사	
		○청소행정과 감사	
	'98.12. 1.(화)	○마포개발공사	
	'98.12. 2.(수)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관리국장인사및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주택과 감사 - 도시개발과 감사 - 건축과 감사 - 공원녹지과 감사	
감처 사리 결단 과제	'98.12. 3.(목) ~12.24.(목)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감사결과 처리및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각과별, 동사무소, 마포 개발공사별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